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3216
----------	------

2025. 12. 1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5. 10. 20. 최진혁 의원 발의 (2025. 10. 23. 회부)

2. 제안이유

- 최근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가방 낙하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올바른 이용습관 정착을 위한 인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승강기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가하여,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7호).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① ----- -----. 1. ~ 6. (현행과 같음) <u>7.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사업</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에 사용되는 설비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말하는데¹⁾, 최근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부주의, 관리소홀로 인해 여행가방이 아래로 떨어져 일어난 사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호..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 · 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 · 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 · 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고가 방송매체에 방영²⁾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음.

-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 제46조³⁾, 시행령 제36조⁴⁾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고시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는 승강기의 종류별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운영규정 제18조 상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중 제9호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강기안전공단 안내문 등에서 여행가방(캐리어)을 들었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원칙적으로 여행가방을 들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됨.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는 뛰지 않아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5.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힘껏 쇼핑카트를 밀어야 한다.

2) JTBC 사건반장, 2025년 8월 6일 방영, 캐리어 두 개가 덮쳐 “일상이 공포”

3)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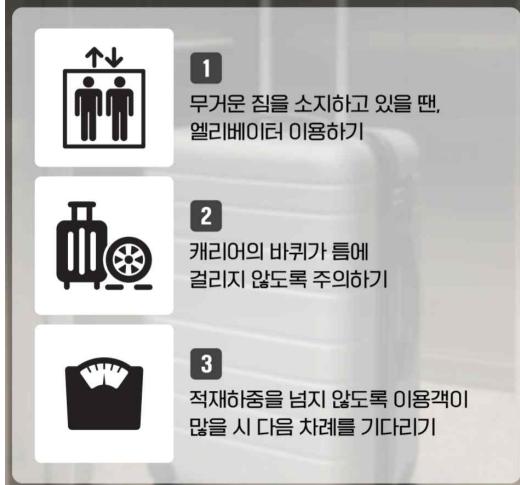
4)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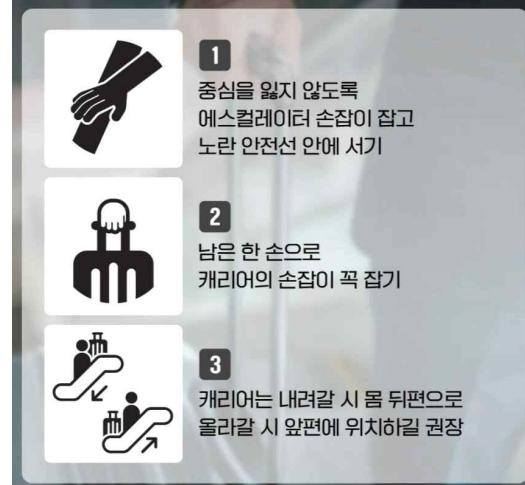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에스컬레이터 여행가방(캐리어) 이용 안내문>

**캐리어가 무거울 땐,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주세요!**



**피치 못하게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캐리어는 이렇게 해주세요!**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주체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강제하지 못하고 있으며⁵⁾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유치원,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교원 등

5) 오마이뉴스(25.8.1.), “‘이것’ 있다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말고 엘리베이터 타세요.” 중, “지하철은 여행용 캐리어나 손수레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찾아가기 귀찮다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검색일자 25.12.8.) <https://omn.kr/2erxv>

대상) 및 홍보사업(대중미디어, 홍보물제작·부착, 캠페인, 안전주간 행사운영)을 시행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조례 제4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하여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용훈련을 10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승강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7조> 공단의 사업	<조례 제4조>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p>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점검 및 안전점검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강기 안전관리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4.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 6. 서울특별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종합하면,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이용자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차별화(대상, 교육방식 등)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교육 및 홍보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하겠음.

- 또한, 상위 규정인 운영규정에서 정한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여행가방을 소지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행위를 강제로 제지하지 못하는 설정임에 따라, 여행가방을 소지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다가 기계를 고장 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벌칙 규정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강 대 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홍 예 지	02-2180-8205

[붙임] 관계법령(p.7)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 가. 주기적인 점검
 -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승강기 소유자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 2022. 3. 2., 일부개정]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는 뛰지 않아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5.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힘껏 쇼핑카트를 밀어주어야 한다.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준수사항) 휠체어리프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 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보호대를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휠체어리프트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에는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휠체어리프트에는 화물을 실지 않아야 한다.
8. 휠체어리프트에 갇히는 등 비상시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10.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이용자는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면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의 시동을 꺼야 한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장치나 비상통화장치 등으로 구조 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며,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